

이 보도자료는 2021. 3. 10. 10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정효삼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
2021. 3. 10.(수)

제목

조○○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추징한 32억원 환부절차 개시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(검사장 조재연)은 ‘조○○ 불법 다단계 사건’으로 추징·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현금 약 32억 원에 대해,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환부절차를 개시하였음
- 이 사건 추징금은 13개 금융다단계법인, 채권단에 대한 횡령·배임범행 수익금을 추징한 것으로, 부패재산몰수법 상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위법인 등이 환부청구권자임
-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위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, 추심명령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(053-740-4699, 053-740-4648)를 설치·안내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

I 주요 진행경과

- '14. 7.~'16. 12. 대구지검, ‘조○○ 불법 다단계 사건’ 관련 주범 ㄱ○○ (금융다단계법인 부사장) 등 총 77명 기소
 - ※ '17. 1. 13. 주범 ㄱ○○ 1심 선고(징역 22년 및 추징금 약 125억 원)
- ~'21. 2. 28. 대구지검, 추징 확정액 약 229억 원 중 현금 약 32억 원 집행
 - ※ '21. 2. 26. 정확·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‘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’ 개최
- '21. 3. 10. 대구지검,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

II

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요

● 회복(환부)대상재산

- '21. 2. 28. 현재 대구지검에서 추정·보관 중인 현금 약 32억 원

● 회복대상재산 환부 청구 대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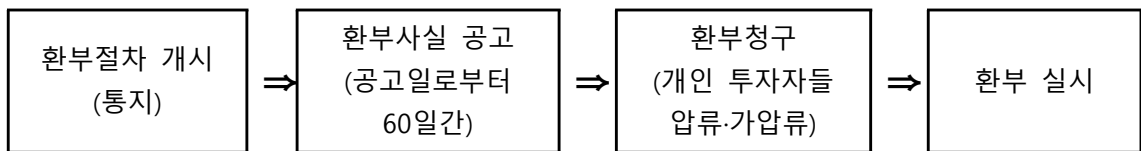
- 이 사건 추정금은 주범 ㄱ○○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부패재산 몰수법에 근거하여 '금융다단계법인 등'에 대한 횡령·배임 범행의 수익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 것임

- 부패재산몰수법은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'피해자'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률상으로 아래와 같이 횡령·배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, 단체에게 환부청구권이 있음

연번	피고인	추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	환부 대상 피해자	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(원)
1	ㄱ○○	(주)A○○ 등 법인 자금 횡령 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횡령)】	(주)A○○	577,627,470
			(주)B○○	577,627,470
			(주)C○○	577,627,470
			(주)D○○	181,297,038
			(주)E○○	181,297,038
			(주)F○○	181,297,038
2	ㄴ○○ ㄷ○○ ㄹ○○	(주)G○○ 등 법인 자금 횡령 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횡령)】	(주)G○○	566,356,105
			(주)H○○	13,934,762
			(주)I○○	13,934,762
			(주)J○○	13,934,762
			(주)K○○	13,934,762
			(주)L○○	13,934,762
3	ㅁ○○	(주)M○○ 법인 자금 횡령 【업무상횡령】	(주)M○○	100,000
4	ㅂ○○ ㅅ○○ ㅇ○○ ㅈ○○	N○○채권단 자금 횡령·배임 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횡령)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】	N○○채권단	269,795,200
	ㅊ○○			
5	ㅋ○○ ㅌ○○ ㅍ○○	N○○채권단 자금 배임 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】		51,000,000

● **실질적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검토**

- 법률상 피해자는 단체·법인이나 실질적 피해자는 위 법인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므로, 이 사건 추징금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
- 법률상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, 위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(가)압류·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권리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는 방안이 있음
- 대구지검은 환부 전담 민원 창구(053-740-4699, 053-740-4648)를 통해, 환부절차 개시 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회복방안 절차에 대해 함께 안내하여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예정



III **향후 계획**

-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회복 환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- 더불어,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도 계속적·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임 ☑